



요약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회사별 가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최근 금융당국이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 국가는 규제 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함. 국내 보험산업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회사별 가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최근 금융당국이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IFRS17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기준으로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997년부터 작성을 시작한 후 25년 만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됨
 - IFRS17의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되며 이 중 미래현금흐름은 보험회사가 IFRS17 원칙에 따라 스스로 정한 계리적 가정에 기반하여 산출함
 - 제도 시행 초기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금융당국은 신 제도지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¹⁾
- 과거 감독회계는 규정 중심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일반회계(IFRS)에서 준용하였으나, 이제는 감독회계도 원칙 중심으로 변화하여 할인율, 위험조정만 기준이 제시되고 계리적 가정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 감독회계는 IFRS 전면 도입국이라는 제약 조건하에서 비용(회사 부담) 대비 효익(감독효과) 극대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간 조화 추구라는 원칙에 따라 계리적 가정에 대해 원칙 중심의 산출 기준을 제시함²⁾
 - 다만, 비교가능성을 위해 경제적 가정인 할인율은 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하며 위험조정은 신뢰수준 75%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을 제시함³⁾
- 본고에서는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국가의 계리적 가정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5. 31),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2)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21), 「2023년 IFRS17(보험계약) 시행 대비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3) 노건엽(2022), 「IFRS17 도입 관련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개정 사전예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 영국의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는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및 계리표준 제정, 계리감독자포럼 개최,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 계리가정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함

- 영국은 2000년 말 Equitable life⁴⁾의 파산 이후 보험계리에 대한 전문성 개발, 계리사 역할 설정, 고품질의 전문적이고 윤리적 기준 설정, 공익 보호 의무 등을 위해 규제 개혁을 폭넓게 추진하였음
 - 영국 재무부의 연구용역⁵⁾ 결과에 따라 계리규제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수립,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기술적 및 윤리적 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계리 교육 및 전문성 개발 등 보험계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함
- 계리가정 규제체계로서 ① 계리사 스스로의 자율규제, ② 감독당국의 직접 규제, ③ 독립기관이 감독하는 자율규제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③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림
 - 계리사 스스로의 자율규제는 공공의 이익 보호나 대중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우며, 감독당국에 의한 법적 규제는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혁신과 계리 전문성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보았음
 - 한편, 계리사를 규제하는 별도 기관 설립에는 계리사 수 대비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기존 규제기관 중 성격이 유사한 FRC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 FRC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감독업무를 주로 하였으나 2006년부터 보험계리 감독업무도 같이 수행함(그림 1) 참조
 - 계리표준위원회(Actuarial Standard Board) 구성 및 계리표준(Technical Actuarial Standard)을 제정하고 금융행위감독청(FCA), 건전성감독청(PRA), 연금감독자, 계리사회 등이 참가하는 계리감독자포럼(Joint Forum on Actuarial Regulation; JFAR) 주관 및 계리전문기관인 계리사회(IFoA)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함

〈그림 1〉 영국 재무보고위원회 조직



주: 계리감독업무가 포함된 당시 조직이며 현재는 조직체계가 변경됨

자료: Paul George(2012), "The UK's independent regulator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reporting"

4) Equitable life는 176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회사이며, 보험계리사(Actuar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회사였으나 1980년대에 판매한 고금리계약으로 인해 2000년 말 지급불능상황이 되어 신계약 판매 중지, 계약 이전 등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1월 Utmost Life and Pensions의 자회사가 됨

5) HM treasury(2005), "Morris Review of the Actuarial Profession: Final Report"

- 캐나다는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에서 계리실무표준 제정 및 계리사를 관리하며 계리실무에 대해 필요 시 감독당국이 변경 또는 추가 지침을 요구할 수 있음
 - 캐나다는 이미 1970년대부터 계리적 판단에 의한 가정의 신뢰성 문제가 논의되어 1980년대 이후 평가 기술 보고서(Valuation technique papers), 교육노트(Educational note) 등을 통해 실무표준이 정착됨⁶⁾
 - 계리가정에 대한 규제는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ctuarial Profession Oversight Board; APOB)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산하에 계리표준위원회(ASB), 전문성 및 자격 모니터링 위원회(PCMB) 등이 있음
 - 영국의 계리 개혁정책을 받아들여 2007년 계리표준감독위원회(Actuarial Standards Oversight Council; ASOC)와 계리표준위원회(ASB)를 설립하였으며 2020년 ASOC의 역할을 확대하여 APOB를 설립함
 - APOB는 계리사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15명의 위원 중 계리사는 3명으로 제한하고 학계, 법조계, 감독당국 등 계리사 외 전문직으로 구성되며 계리사회(CIA)로부터 재정적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됨
 - ASB는 계리표준 설정 프로세스의 지시 및 관리하고 계리실무표준을 채택함
 - PCMB는 계리사회의 전문성 개발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지시 및 관리하고 직업 행동 규칙에 대한 해석 제공, 전문성과 공익성 관점에서 계리사 자격 요건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과 조언을 제공함
 - 회계원칙은 존중하나 보험회사법에 근거하여 감독당국이 계리실무에 대해 변경 또는 추가 지침을 요구할 수 있음⁷⁾
- 요컨대 영국과 캐나다는 계리가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 기관 또는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하여 실무표준 제정, 계리사 전문성 개발 및 직업윤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영국은 FRC, 캐나다는 APOB에서 계리가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리사의 전문성 개발,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함
 - 한편, 계리실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의 위원회 참여, 계리실무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이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 및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함 (<그림 2 참조>)
 - 회계정책서는 책임준비금 산출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및 해당 정책의 선택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계리방법서에서는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평가 시 적용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한편, 회사 자체 검증 강화를 위해 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며,⁸⁾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을 통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⁹⁾

6) Pelletier and Dave(2019), "Actuarial Standard-Setting and Our Professional Governance in Canada", IAA Professionalism Committee

7) Insurance Companies Act, SC 1991, 365.(2)

8) 보험업법 제181조(보험계리), 제181조의 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9)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 2(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그림 2〉 보험부채 검증 프로세스



자료: 노건엽·조영현·이승주(2023),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경영」,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이러한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닌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이므로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외 사례처럼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표준 제정, 심의, 의결을 수행하고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직업윤리 기준 설정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구성 시 계리사뿐만 아니라 학계, 감독당국 등 참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대한 법적 위치 부여, 감독당국의 승인절차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도 다양한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해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한국계리학회는 보험계리실무표준의 작성 및 관리 등을 수행¹⁰⁾하며,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한국계리실무기준 제정,¹¹⁾ 윤리기준 배포, 계리보고서 제정,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함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선임계리사 협의회는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실무표준을 작성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계리적 가정(해지율, 손해율 등)을 산출하고 보증준비금 및 부채적정성평가 실무표준을 작성하였음¹²⁾
 - IFRS4에서는 3개의 계리실무표준(보증준비금, 부채적정성평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선임계리사 협의회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만 유지되고 있음
-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이익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10) 한국계리학회 정관 제3조(사업) 제2항

11) 한국보험계리사회 보도자료(2021. 11. 8), “한국계리실무기준(KSAP) 제4호 및 IFRS17 계리적 가정 실무기준 제정”

12) 보험개발원(2018. 11. 22), 「IFRS17 하에서의 Best Practice Note의 해외 사례와 국내 적용의 제언」, IFRS17&K-ICS 하에서의 보험사 리스크관리방안 세미나